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5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3. 10. 16.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이유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2.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9조)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5조)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3. 협 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4. 기 타

- 입법예고(2023. 8. 25. ~ 9. 13.)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3)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5)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56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동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제54조에 따라 위임된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제298회 정례회(2020.12.22.)를 통해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는 행정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선정 및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지침」(이하 ‘교육청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 운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선정과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과 시민의 직접적 통제기능을 배제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지침으로 관리 운영되었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선정과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과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직접적 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개정조례안은 총 18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평가 및 공개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구성체계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에 맞춘 절차와 조항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관련 지침¹⁾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2)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9조)

○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회피,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9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규정은 ‘행정업무규정’ 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교육청 지침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동 개정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위원회 구성 비교

구분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교육청 지침	개정 조례안
명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인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성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각 부서의 총괄과장	-	총괄부서의 장
임명·위촉직	- 각 실·국별 총괄과장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각 실·국별 부서장 4명 및 정책보좌관 1명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회의 시마다 재구성	위촉위원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표-2] 위원회 구성 외 규정 비교

구분	행정업무규정	교육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교육청 지침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 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 나.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척·회피	제50조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조⑩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운영 ◦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운영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5조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4조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당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정책연구용역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8조)

○ 동 개정조례안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절차([붙임] 참조)를 규정한 것으로, ① 행정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과(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②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기준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한 것, 그리고 ③ 현행 조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안 제17조)한 것으로 대부분 서울시교육청 정책

연구용역 업무편람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표-3] 참조).

-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조례안 관련 법령 근거 규정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규정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심의 요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청 지침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8조, 교육청 지침
제12조(과제담당관의 지정)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교육청 지침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1조, 교육청 지침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동 조례 제4조, 제5조, 교육청 지침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동 조례 제6조, 교육청 지침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붙임] 정책연구용역 추진 흐름도²⁾

담당	업무	주요 내용
정책·안전기획관	①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상반기 2회 수요조사 실시 (예정)
↓	↓	↓
각 부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포함)	②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	유사·중복 선행연구 검토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출
↓	↓	↓
교육정책연구소	③ 과제 사전 검토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전 과제 적합도 및 연구유형 의견 제출
↓	↓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④ 정책연구과제 선정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필요에 따라 연구유형 지정
↓	↓	↓
과제담당관	⑤ 연구자 선정 (계약 체결)	수의계약 연구자 및 연구계획 심의 경쟁계약 계약 법령에 따라 선정
↓	↓	↓
과제담당관	⑥ 진행상황 점검	연구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	↓
과제담당관	⑦ 연구결과 평가	보고회 개최, 외부전문가 포함 평가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제출
↓	↓	↓
과제담당관 정책·안전기획관	⑧ 공개 및 활용	연구결과 공개, 활용결과 보고 관리실태 점검 실시

2)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업무편람', 정책·안전기획관, 2021.12.22.

관계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약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일부개정]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영 제51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7. 10. 17.>
2. 삭제 <2017. 10. 17.>
3. 삭제 <2017. 10. 17.>
4. 삭제 <2017. 10. 17.>
5. 삭제 <2017. 10. 17.>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영 제52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